

행정자치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마련

행정부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22개 공종에 해당되며, 200억원 이상 사업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시공난이도가 있는 22개 공종에 대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발주공사 중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기준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22개 공종에 해당되며, 200억원 이상 사업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 또는 길이 500m 이상), 공항, 댐 축조, 에너지 저장시설, 간척공사, 준설,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이 포함된 공사,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지름 1,000mm 이상, 정수장 포함), 하수도(단면적 20㎡ 이상), 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전시시설, 공용청사(연면적 2만㎡ 이상), 송전공사, 변전공사, 공동주택(16층 이상) 등이다.

이 대상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1단계로 경영상태, 2단계로 기술적 이행능력의 사전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영상태(100점 만점)는 재무비율 평가방식을 선택할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매출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영업기간을 평가한다.

신용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고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100점)은 시공경험(45점), 시공평가결과(10점), 기술능력(45점), 신인도(3점)로 평가한다.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절차는 지자체가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입찰공고를 낸 후 건설업체가 신청마감일까지 낸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입찰적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적격요건은 경영상태의 경우 재무상태 비율은 평점 70점 이상,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는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기업신용평가 BB- 이상 등이다.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분야 적격요건은 평점 90점 이상으로 정했다.

입찰적격자로 확정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른 적격심사기준은 경영상태 13점, 기술이행능력(PQ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평점×27/100) 27점,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12점,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4점, 시공여유율 4점, 입찰가격 (30점-입찰가격/예정가격×100) 30점이다.

부적격통지를 받은 업체나 선순위 낙찰자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는 10일 이내 재심사를 해야 한다.

▲ 경영상태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연도 부채 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0	A. 50% 미만 B. 75% 미만 C. 100% 미만 D. 125% 미만 E. 125% 이상	20.0 17.7 15.5 13.2 11.0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0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0 17.7 15.5 13.2 11.0
다. 최근연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총자산)	3) 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2.0	A. 50% 미만 B. 75% 미만 C. 100% 미만 D. 125% 미만 E. 125% 이상	12.0 10.6 9.3 7.9 6.6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 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2.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12.0 10.6 9.3 7.9 6.6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6)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10.0 9.0 8.0 7.0 6.0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7) 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3.0 2.6 2.3 1.9 1.6
사. 최근연도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8) 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7.0 6.3 5.6 4.9 4.2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9) 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8.0	A. 150% 이상	8.0
			B. 100% 이상	7.1
			C. 50% 이상	6.2
			D. 10% 이상	5.3
			E. 10% 미만	4.4
자. 영업기간	-	8.0	30년 이상	8.0
			30년 미만 ~ 20년 이상	8.0
			20년 미만 ~ 10년 이상	8.0
			10년 미만 ~ 5년 이상	7.0
			5년 미만	6.0

▲ 시공경험 심사기준

① 동일실적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기준)			평점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 일한 종류의 공 사실적	1) 규모(길이 또 는 용량 및 면적 등 기준)	18.0	A 200%이상	A. 200%이상	A. 180%이상	18.0
			B. 165%이상	B. 150%이상	B. 135%이상	15.9
			C. 110%이상	C. 100%이상	C. 90%이상	13.9
			D. 55%이상	D. 50%이상	D. 45%이상	11.9
			E. 15%이상	E. 10%이상	E. 10%이상	9.9
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2) 금액(실적인정 규모 이상 공사 (중)의 각각 준공 금액의 합계액) : 관급자재 포함.	16.0	A 200%이상.	A. 200%이상	A. 180%이상	16.0
			B. 165%이상	B. 150%이상	B. 135%이상	14.2
			C. 110%이상	C. 100%이상	C. 90%이상	12.4
			D. 55%이상	D. 50%이상	D. 45%이상	10.6
			E. 15%이상	E. 10%이상	E. 10%이상	8.8
다. 주계약자관 리방식에 의한 실적 평가	3) 입찰공고시 해 당업종 명시	11.0	\cdot 평점 = 11 × 실적계수 \cdot 실적계수 = $\frac{\text{실적합계액}}{(\text{추정가격} + \text{부가가치세}) \times 5}$			
다. 주계약자관 리방식에 의한 실적 평가	4) 입찰공고시 해 당업종 명시	45.0	\cdot 평점 = 45 × 실적계수 \cdot 실적계수 = $\frac{\text{실적합계액}}{(\text{추정가격} + \text{부가가치세}) \times 5}$			

② 유사실적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추정가격기준)			평점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 또는 규모 (계약담당자가 선택)	22.0	A 200%이상	A. 200%이상	A. 180%이상	22.0
			B. 165%이상	B. 150%이상	B. 135%이상	19.5
			C. 110%이상	C. 100%이상	C. 90%이상	17.0
			D. 55%이상	D. 50%이상	D. 45%이상	14.5
			E. 15%이상	E. 10%이상	E. 10%이상	12.1
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복합업종인 경우 입찰공고시 평가 대상업종 명시	11.0	· 평점 = 11 × 실적계수 실적합계액 · 실적계수 = $\frac{\text{실적합계액}}{(\text{추정가격} + \text{부가가치세}) \times 5}$			

▲ 기술능력심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업체 보유인력으로 평가)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4.0	A. 4.0 이상	14.0
			B. 3.0 이상	11.9
			C. 2.0 이상	9.8
	D. 1.0 이상		7.7	
	2)일반기술자	10.0	A. 15인 이상(12인 이상)	10.0
	B. 12인 이상(9인 이상)		7.8	
	C. 10인 이상(6인 이상)		5.5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3)시공지원 기술자	6.0	A. 4인 이상(2인 이상)	6.0
	B. 4인 미만(2인 미만)		3.3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만 평가)	4)신기술개발	1.0	A. 2건 이상	1.0
			B. 1건	0.6
	5)신기술 활용실적	3.0	A. 60억원 이상	3.0
	B. 6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6	
	C.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2	
	D. 1억원 미만		2.0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6)당해공사의 동일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3.0	A. 2년 이내 시공실적	3.0
	B. 5년 이내 시공실적		2.5	
	C. 7년 이내 시공실적		2.0	
	D. 10년 이내 시공실적		1.6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라.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7)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200% 이상	8.0
			B. 100% 이상	7.1
			C. 50% 이상	6.2
			D. 10% 이상	5.3
			E. 10% 미만	4.4

▲ 신인도 평가

심 사항 목	배점한도	평가 방법	최고(저)한도
1.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1	3천만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벌금 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4. 직전연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체별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미달하게 된 자	2.0	평균재해율 0.4배 이하	2
	1.0	평균재해율 0.7배 이하	
	0	평균재해율 1.0배 이하	
5.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지방계약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자,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최고(저)한도
6.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5)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부실벌점	7)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 평균 부실벌점)	-1	2점 이상 10점 미만	-3.0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8. 기타	8)최근 1년간 당해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사입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 주의통보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0.5	2회 이상	-1.0
		-1.0	4회 이상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적격심사기준

심사분야	평가방법	배점
계		100
① 경영상태	· 재무제표 등에 의한 평가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13/100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3>에 의한 경영상태평점 13/35 ※공동수급체 평가: 구성원 각각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13
② 기술이행 능력	PQ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평점 $\times \frac{27}{100}$	27
③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평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12
④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	14
⑤ 시공여유율	''	4
⑥ 입찰가격	$\text{평점} = 30 \left \left(\frac{88 \text{ 입찰가격}}{100 \text{ 예정가격}} \right) \right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0